

괴 산 군



www.goesan.go.kr

제1143호 2024년 11월 1일(금)

선 람	기관의 장

군 보

조 례

- 괴산군조례 제2915호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괴산군조례 제2916호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괴산군조례 제2917호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 괴산군조례 제2918호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11

고 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 163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등 지정 고시 ----- 15
- 괴산군 고시 제2024 - 165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3

공 고

- 괴산군 공고 제2024 - 1045호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7
- 괴산군 공고 제2024 - 1047호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31
- 괴산군 공고 제2024 - 1050호
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6
- 괴산군 공고 제2024 - 1058호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8
- 괴산군 공고 제2024 - 1059호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0

회람								
----	--	--	--	--	--	--	--	--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4년 11월 1일

괴산군조례 제2915호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회 보고)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보고사항 발생 후 최초 도래하는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 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조의2(의회 보고) 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u> <u>②군수는 보고사항 발생 후 최초 도래하는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 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u>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4년 11월 1일

괴산군조례 제2916호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체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회 보고) (생략)	제6조(의회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체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u><신설></u>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u><신설></u>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u><신설></u>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후관리) ①·② (생략)	제7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 산 군 수

2024년 11월 1일

괴산군조례 제2917호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괴산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

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괴 산 군 수

2024년 11월 1일

괴산군조례 제2918호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산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걷기사업”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괴산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산통제(등산로 폐쇄)등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에 의거 괴산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 11. 1.

괴 산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 구역 지정사유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우려되는 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함.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 기간

○ 2024년 가을철 : 2024. 11. 01. ~ 12. 15.

○ 2025년 봄 철 : 2025. 02. 01. ~ 05. 15.

※ 입산통제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 고시의 효력은 자동으로 해제.

3.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할 수 있는 경우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 군부대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

을 위한 입산

-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4. 행정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입산허가 신청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1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구역에 대한 문의

- 괴산군청 정원산림과 (043-830-3275, 각 읍.면사무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

..... 자 르 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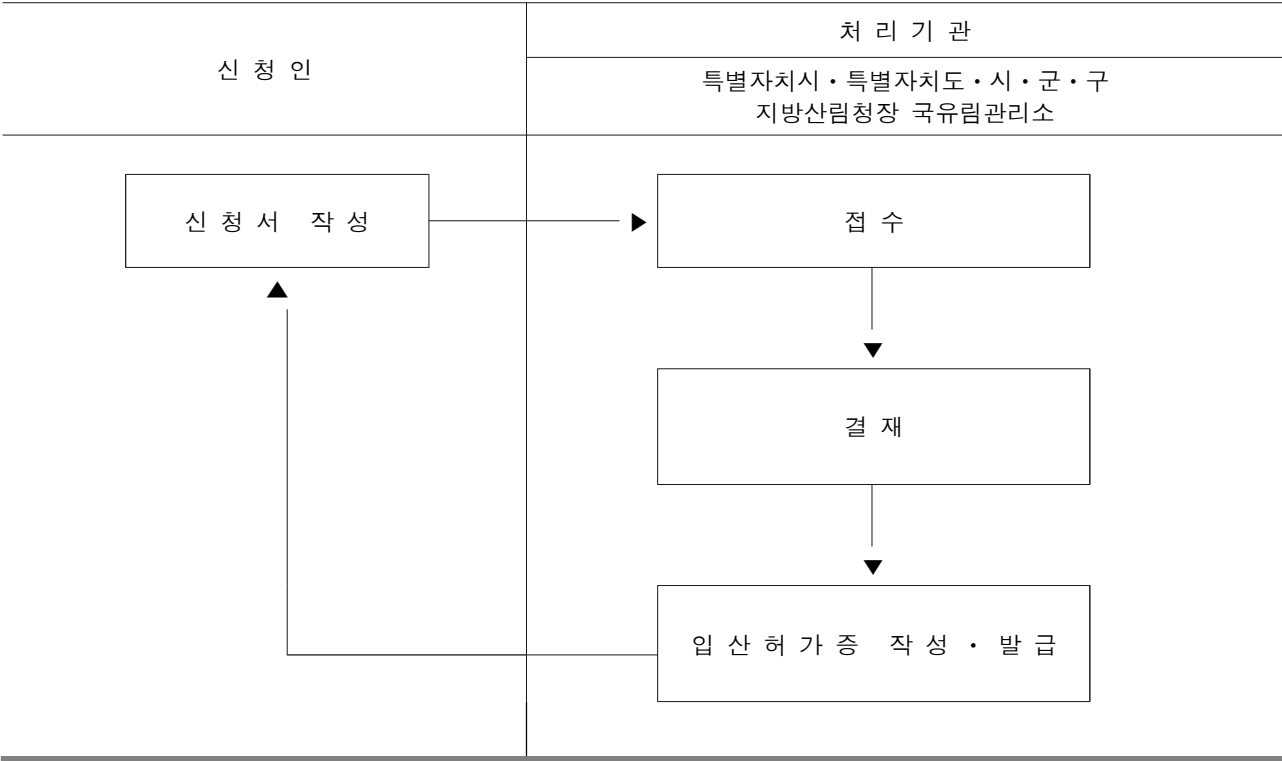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 의 사 항

-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괴산 명산 등산로 · 산책로 현황

◆ 국립공원 지역 **비법정등산로(법규로 규정하지 않은 등산로)** 폐쇄

☞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등산로 문의처 : 화양동 분소(☎832-4347), 쌍곡 분소(☎832-5550)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기간(변경가능) : 매년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 속리산국립공원 등산로 17개소는 국립공원에서 별도 관리

◆ ○ : 상시개방 △ : 산불기간통제 x : 등산불가

산 이름		높이	소재지	등산가능여부	개방, 통제 주요노선 구간	길이	소요시간	통제	
	1	칠보산	778m	칠성면 쌍곡리	○	• 떡바위-정상-쌍곡폭포 ※ 각연사-칠보산 → 입산통제	6.2km	3시간 30분	상시개방 (부분통제)
	2	대야산	931m	청천면 삼송리	○	• 월령대-대야산-피아골-월령대	4.8km	3시간	상시개방
	3	도명산	643m	청천면 화양리	○	• 학소대-도명산-첨성대 • 사담리-낙영산-도명산	6.0km 6.5km	3시간 30분 4시간	상시개방
	4	낙영산	684m	청천면 사담리	○	• 사담리-낙영산-도명산	6.5km	4시간	상시개방
	5	덕가산	850m	연풍면 적석리	x	→ 과수원-정상-갈림길-안부-임석마을			비법정등산로 통제
	6	악취봉	845m	연풍면 적석리	x	→ 삼거리-정상-바위봉-임석마을			비법정등산로 통제
	7	중대봉	846m	청천면 삼송리	x	→ 농바위-대슬랩-정상-곰바위-농바위			비법정등산로 통제
	8	보배산	750m	칠성면 태성리	x	→ 서당말-안부-정상-움막터-각연사			비법정등산로 통제
	9	남군자산	827m	청천면 관평리	x	→ 하관평-삼형제바위-정상-하관평마을			비법정등산로 통제
	10	조봉산	680m	청천면 고성리	x	→ 상신리-정상-코뿔소바위-상신라			비법정등산로 통제
	11	갈모봉	582m	청천면 관평리	x	→ 매표소-칠형제-바행기바위-선유동			비법정등산로 통제

12	군자산	948m	철성면 쌍곡리	x	→소금강술밭주차장-정상-도마골,원효굴			비법정등산로 통제
13	아가봉	541m	청천면 운교리	△	· 갈론-아가봉-옥녀봉-갈론	8.2km	4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14	옥녀봉	599m	철성면 사은리	△	· 갈론-아가봉-옥녀봉-갈론	8.2km	4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15	백악산	857m	청천면 사담리	△	·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km	6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16	막장봉	887m	철성면 쌍곡리	△	· 절말-쌍곡폭포-장성봉-막장봉-제수리재	12.0km	7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17	가령산	654m	청천면 송면리	△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km	3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18	금단산	766m	청천면 사담리	○	· 사담리마을회관-덕가산북봉-정상-신월초	8.0km	3시간	상시개방
19	보광산	539m	사리면 사담리	○	· 모래재-굴다리-보광사-정상-고리티고개-토골	8.8km	3시간 30분	상시개방
20	주월산	470m	감물면 구월리	○	· 느릅재-정상-간곡마을	2.5km	1시간30분	상시개방
21	성불산	520m	괴산을 검승리	○	· 자연휴양림-1봉-사거리갈림길-정상-수석전시관-자연휴양림	5.0km	2시간30분	상시개방
22	마역봉	927m	연풍면 원풍리	△	· 레포츠공원-할미봉-방아다리봉-신선봉-정상-3관문-휴양림매표소	4.5km	3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23	신선봉	967m	연풍면 원풍리	x	· 신선봉-마역봉 구간 비법정 출입금지	4.5km	3시간30분	비법정등산로 통제 (월악산국립공원)
24	박달산	825m	장연면 방곡리	△	· 느릅재-740봉-800봉-정상-안부-무심사	2km	2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25	마분봉	776m	연풍면 적석리	△	· 은티마을-입석재갈림길-정상-UFO바위-은티마을	3.9km	3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26	깃대봉	835m	연풍면 원풍리	△	· 한섬지기-말용초-마당바위-정상-말용초-한섬지기	3.8km	3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27	신선암봉	937m	연풍면 원풍리	△	· 새터마을-전망대-공기돌바위-정상-동쪽안부-새터마을 · 절골-청암사-공기돌바위-정상-안부-상암사터-절골	6.2km 4.8km	3시간20분 2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28	조령산	1,025m	연풍면 원풍리	△	· 이화령-제1헬기장-조령샘터-정상-상암사터-절골	4.7km	3시간4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29	백화산	1,063m	연풍면 분지리	△	· 이화령-황학산헬기장-정상-평전치-분지안말 · 분지안말-힌드외-황학산삼거리-정상-평전치-분지안말	9.9km 5.2km	5시간 4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30	이만봉	990m	연풍면 분지리	△	· 분지안말-곰틀봉-정상-용바위-도막	4.7km	3시간4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31	시루봉	914m	연풍면 주진리	△	· 진촌마을-주능선-정상-Y자갈림길-오작교바위-분지저수지	4.0km	3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32	희양산	998m	연풍면 주진리	x	→은타마을-정상-은타마을			등산불가구역

								(봉암사사찰림)
33	구왕봉	898m	연풍면 주진리	△	• 은티마을-지름티재-정상-호리골재-은티마을	3.4km	3시간2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34	조항산	951m	청천면 삼송리	△	• 늘재-청화산-갯바위재-조항산-밀재-용추계곡 • 삼송리용송-의상저수지-갯바위재-정상-대문바위-의상저수지	17.5km 5.0km	10시간 4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35	청화산	970m	청천면 삼송리	△	• 늘재-청화산-갯바위재-조항산-밀재-용추계곡 • 늘재-청화산-갯바위재-조항산-대문바위-의상저수지	17.5km 13.5km	10시간 6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36	연어봉	611m	연풍면 원풍리	△	• 레포츠공원-할미봉-방아다리봉-정상-레포츠공원	4.9km	3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37	사랑산	647m	청천면 사기막리	○	• 용추슈퍼-코끼리바위-사랑바위-정상-삼거리봉-용추폭포	4.4km	3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89	칠보산	858m	청안면 문당리	△	• 질마재-칠보재-정상-솔티재-보광산관광농원	8.0km	5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39	도덕산	456m	괴산읍 검승리	△	• 점골-큰바위얼굴-정상-덕재골(임도)	2.3km	2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40	배미산	545m	문광면 옥성리	x	• 가죽나무골-정상-가죽나무골	3.0km		등산로 정비 중
41	설운산	593m	청천면 금평리	△	• 송시열비각-송우암신도비-매봉산-정상-아스콘공장	5.5km	3시간 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42	백마산	464m	사리면 소매리	△	• 백마저수지-정상-백운사-백마저수지 • 백마저수지-정상-백운사-고리티고개-보광산	3.0km 7.3km	3시간 6시간	산불예방기간 통제
43	설우산	546m	소수면 소암리	△	• 소수면사무소-굴다리-정상 • 입암2리(원장골)-정상 • 눈비산마을-정상	2.2km 1.38km 1.4km	2시간 30분 1시간30분 1시간30분	산불예방기간 통제
44	남산	394m	괴산읍 동부리	○	• 동부주공-정상-자연학습장-성황천변 • 남룡사-정상-자연학습장-성황천변	2.9km	1시간	상시개방
45		산책로	괴산읍 동부리	○	• 지안스로가아파트-장미터널-남룡사	2.5km	50분	상시개방
46	주민행복 공원	산책로	괴산읍 일원	○	• 숲내음길(2.5km) : 남산길 코스 • 하늘바람길(3km):진산(239.8m)코스 • 솔향기길(1.5km):소나무길코스 • 여울소리길(1.5km):동진천고수부지길	2.5km 3.0km 1.5km 1.5km		상시개방
47	속리산둘 레길	산책로	청천면 ~ 연풍면	○	• 3구간 : 금단산~해품달수련원 • 4구간:해품달수련원~도원리 • 5구간:도원리~선유대 • 6구간:선유대~쌍곡리 • 7구간:쌍곡리~행촌리 • 8구간:행촌리~백화산	5.1km 11.5km 14.0km 15.6km 14.0km 11.0km		상시개방
48	천장봉	450m	칠성면 사은리	○	• 산막이옛길주차장-노루샘-등잔봉-정상-큰진달래능선-산막이종 점	3.5km	2시간30분	상시개방

제1143호

괴 산 군 보

2024. 11. 1.(금)

	49	등잔봉	437m	칠성면 사은리	○	• 산막이옛길주차장-노루샘-정상-천장봉-큰진달래능선-산막이종 접	3.5km	2시간30분	상시개방
	50	산막이옛 길	산책로	칠성면 사은리	○	• 차돌바위선착장주차장-산막이마을	4.0km	3시간	상시개방

괴산군 고시 제2024 - 165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청천신월천정비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04.

괴 산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괴산군수

나.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정비사업

나. 사업명 : 청천신월천정비사업

다. 사업량 : 합성형 라멘교(B=5.0m) L=41.0m, 전석쌓기 A=2,268㎡ 등

라. 사업기간 : 2024. ~ 2025.12.

3. 사업예정지

가.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일원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1월 18일(09:00~18:00)

나. 열람장소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다.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물건 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 제출(양식 참조)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시·도지사나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고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 요령은(양식 참조)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 수용 재결)

6. 기타 사항

가.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5년 02월 예정이며,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감정평가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 통지합니다.

나.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 공고

로 같음합니다.

마.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 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

바.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하천정비팀(☎043-830-3144)으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법인								
○ 추천 일 : 2024.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장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의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 견 서]

의 견 서		
1. 사 업 명		청천신월천정비사업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괴산군수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공고 제2024 - 1045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일원 『감물곶동농어촌도로203호선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괴 산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감물곶동농어촌도로203호선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300m, B=6.0m
- 라. 사업기간 : 2024. 11. ~ 2025. 12.

2.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3.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 랐 기 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1월 15일
- 나. 열 랐 장 소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09:00~18:00)
- 다. 제 출 기 간 : 열람기간과 동일
- 라. 제 출 처 : 열람 장소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
- 마.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바. 제출의견내용 :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의견 제출서를 제출 (양식참조)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괴산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참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24 .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소유자		인장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의견서		
1. 제 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괴산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 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통지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 편입면적 및 물건 등은 확정 측량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담당 : 043-830-3527, 공사담당 : 043-830-3534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감물곶동농어촌도로203호선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관 계 인			비고
	면	리		공부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감물	백양	499	유	436	7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	"	499-1	유	370	213	공	괴산군				
3	"	"	494-2	유	695	1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	"	494-4	유	251	192	공	괴산군				
5	"	"	620-1	도	344	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6	"	"	492-2	유	803	26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	"	"	492-3	유	1,388	43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478	이ㅇ영				
8	"	"	489	전	4,175	11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	"	490-2	유	6,717	359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백양2길 16-20	이ㅇ승				
10	"	"	620	전	6,192	161	국	건설교통부				
11	"	"	488	도	1,663	474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8-20	이ㅇ훈				
12	"	"	487	전	102	4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289	이ㅇ규				
13	"	"	619-33	전	743	49	국	환경부				
14	"	"	596-8	유	325	21	국	환경부				

괴산군 공고 제2024 - 1047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일원 『괴산정용농어촌도로306호선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괴 산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괴산정용농어촌도로306호선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615.2m B=5.0m
- 라. 사업기간 : 2024. 11. ~ 2025. 12.

2.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3.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 람 기 간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1월 15일
- 나. 열 람 장 소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09:00~18:00)
- 다. 제 출 기 간 : 열람기간과 동일
- 라. 제 출 처 : 열람 장소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
- 마.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바. 제출의견내용 :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의견 제출서를 제출 (양식참조)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괴산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참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24. .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소유자		인장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의견서		
1. 제 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괴산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 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통지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라.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 편입면적 및 물건 등은 확정 측량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담당 : 043-830-3527, 공사담당 : 043-830-3534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괴산정용농어촌도로306호선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면적(m ²)		소 유		관 계 인			비고
	면	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괴산	정용	243-2	답	1,567.0	284	정용리 264	안○현				
2	괴산	정용	243-1	답	1,950.0	333.4	서부리 123 공공임대주택 103-301	안○복				
3	괴산	정용	247-4	답	1,260.0	135.8	정용리 96	석○업				
4	괴산	정용	247-3	답	3,276.0	571.7	정용리 264	안○현				
5	괴산	정용	247-2	답	2,509.0	73.8	정용리 264	안○현				
6	괴산	정용	248	답	1,005.0	233.2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11 동부아파트 103-1408	김○성				
7	괴산	정용	253-2	답	1,137.0	30.2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67-13 선경아파트 2-905	송○섭				
8	괴산	정용	717	도	5,648.1	899.5	국	국토교통부				
9	괴산	정용	253-1	답	2,003.0	101.2	정용리 96	석○업				
10	괴산	정용	252-1	답	1,061.0	202.8	정용리 96	석○업				
11	괴산	정용	252-2	구	155.0	14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2	괴산	정용	260-1	구	248.0	237.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3	괴산	정용	260-2	답	446.0	126.8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4	괴산	정용	259-3	구	3.0	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	괴산	정용	732	도	829.6	70.7	국	국토교통부				
16	괴산	정용	98-1	답	1,510.0	270.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1길 9-4	이○덕				

17	괴산	정용	696-6	구	1,367.3	72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괴산	정용	98-4	답	1,510.0	226.8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613번기 15, 105동 2203호(퇴계원쌍용예가)	이o숙				
19	괴산	정용	98-5	답	1,510.0	186.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2길 3-10	이o미				
20	괴산	정용	98-6	답	1,510.0	201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중로 30, 105동 301호(복수동, 오량마을 마루미)	이o정				
21	괴산	정용	97-5	도	65.0	0.4	정용리 264	황o연				
22	괴산	정용	96-8	도	97.0	27.6	정용리 96-8	김o보				
23	괴산	정용	96-1	답	744.4	83.5	정용리 264	안o현				
24	괴산	정용	96-4	대	603.0	100.3	공	괴산군				
25	괴산	정용	96-7	도	41.8	41.8	공	괴산군				
26	괴산	정용	96-10	대	256.7	67.7	공	괴산군				
27	괴산	정용	95-1	도	389.8	51.3	공	괴산군				
28	괴산	정용	99-1	도	385.1	2.1	공	괴산군				

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행촌교차로~울전간군도확포장공사』 편입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폐문부재, 미등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행촌교차로~울전간군도확포장공사
2.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8.(17일간)
3. 공고방법 : 괴산군청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 가. 협의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 나. 협의장소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043-830-3527)
 - 다. 보상내역 : 보상내역 및 금액의 경우 협의 장소에서 확인·열람 가능
 - 마. 보상협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전주소포함),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참물 : 신분증, 인감도장
5. 공시송달 대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리	지번 (분할 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340-10 (340-1)	답	206	206	방*록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울전1길 23-5	-	-	-	
2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359 (359)	묘	80	80	조*익	-	-	-	-	

6. 기 타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 합니다.

나. 기간 내 미협의를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괴 산 군 수

1. 조 례 명 :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지역 내 대규모 유희부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안 제7조)
-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 진행(안 제8조 ~ 안 제18조)
- 공공기여 기준 산정(안 제19조 ~ 안 제2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21.(20일간, 토·일요일포함)

6. 의견제출

-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누리집(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의견제출’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 문의 및 제출처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43-830-3065 (FAX : 043-832-1016)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누리집(홈페이지)
 - 주 소 :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희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협상”이란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재배치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등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괴산군 군계획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이하 “대규모 유희부지”라 한다)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상대상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협상조직

제4조(민간 측 협상단)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 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공공 측 협상단) ① 군수는 민간 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공공 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공 측 협상단은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업무 소관 국·과·소의 장을 협상대표자로 하여 3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① 군수는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 측 협상단과 공공 측 협상단 간 이해를 교환·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민간 측 협상단

2. 공공 측 협상단

3. 외부 전문가: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괴산군에 설치·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 측 협상단과 민간 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상조직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 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협의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상절차

제8조(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희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함)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군관리계획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협상의제 선정) ① 군수는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상의제는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기본구상안 공모) 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상) ① 협상은 제11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협상대상지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은 민간과 협의하여 정하며,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감정평가 시행) ① 감정평가는 개발계획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

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②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상결과 통보) 군수는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군관리계획 결정) 군수는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협상결과의 재검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협상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 협상결과 등이 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 ②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모든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기준

제19조(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① 군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한다.

④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① 민간은 사업의 준공(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를 말함)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사업의 준공 전·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지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

(앞면)

대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 부지	주 소	충청북도 괴산군 읍·면 리 00번지 외 00필지(총00필지)		
	총 면 적	m ²		
	용도지역	지역		
	군계획시설	시설		
	토지이용현황			
군관리계획 변경 검토사항				
사업계획내용	(※ 용도와 규모는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공공기여방안	(※ 공공기여 방법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 등은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발계획(안)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뒷면)

사업부지 조서				
성 명	주 소	소유 부지	기명날인	비고
			(인)	
※ 첨부 자료 : ①위치도, ②현황도, ③건축물대장, ④토지대장, ⑤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⑥등기부등본, ⑦인감증명서				
※ 주의 사항				
1) 기명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는 괴산군 도시건축과에 접수합니다.				
3) 사업계획내용 및 공공기여방안 등 신청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괴산군 공고 제2024 - 1059호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안 제12조의2)
- 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 요건 마련 및 납부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 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축할 경우 및 계획관리 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41조)
- 라.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및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건축기준 완화(안 제46조)
- 마.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18)

4. 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11. 21.(20일간, 토·일요일포함)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 : 괴산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

- 전 화 : 043-830-3077 (FAX : 043-832-1016)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 :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걱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 중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를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을 “지침”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0조의2”를 “영 제50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① 영 제46조의2제2항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지침 및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건축”으로, “60퍼센트 이하”를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6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제1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용적률”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별표 1 및”을 “별표 1의3 및”으로 한다.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관련)

※ 괴산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농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 피산군 관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

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관련)

※ 피산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며, 면적 및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농촌융복합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하며, 면적 및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농촌융복합시설에 한정하며, 면적 및 설치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과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 -----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생략)	제11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u>보상금액에</u> <u>규칙 제8조의2</u>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u>보상금액에</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u>규칙</u>”이라 한다) 제 <u>8조의2</u>----- ----- ----- ----- -----.
제1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u>규칙</u>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 ----- ----- ----- ----- <u>지침</u>-----.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u><신 설></u>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 <u>제1호</u>----- ----- ----- -----.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

<신 설>

제35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고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3(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①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지침 및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을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관리부서----- 문화유산의 -----.

②·③ (생 략) 제4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u><단서 신설></u> 나.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u>생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u>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u>60퍼센트 이하</u>로 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⑥ <u>성장관리계획구역</u>에서는 제40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u>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 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u>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건축</u>----- ----- ----- <u>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이하</u>-----.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u>
---	---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 (생략)

⑦ (생략)

<신설>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2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구역-----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21.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별표 14>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관련)

- ㉞ 피상권 구역화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동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화합물제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물류와 관련된 다목적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분분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관련)

- ㉞ 피상권 구역화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동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의사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화합물제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물류와 관련된 다목적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분분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별표 15]

생선농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 ※ 제14조 군제외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종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종목에 쓰이는 제1종지구의 용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전용면적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 유흥시설 중 작은 술·나목 및 관공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 등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공학교, 고등학교, 교육원(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광·석채굴장, 지열발전, 제1차 산업발전용 가공공장 및 「산업설치확립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의 원단립종리 공장(이하 "원단립종리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악취대기유출방지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호사항을 내지 3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출방지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방류허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 투는 제외한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수질경장지 제4종수질경장지의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4호에 따른 저층폐기물출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간주용 창고(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유통물저장 및 처리시설(박하식용카스콜렌스

<별표 15>

[별표 15]

생선농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관련)

- ※ 제14조 군제외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종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종목에 쓰이는 제1종지구의 용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전용면적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및 유흥시설 중 작은 술·나목 및 관공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 등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공학교, 고등학교(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광·석채굴장, 지열발전, 제1차 산업발전용 가공공장 및 「산업설치확립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의 원단립종리 공장(이하 "원단립종리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악취대기유출방지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호사항을 내지 3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출방지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방류허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수질경장지 제4종수질경장지의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4호에 따른 저층폐기물출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간주용 창고(농업·유통·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유통물저장 및 처리시설(박하식용카스콜렌스

<별표 17>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관련)

- ※ 지상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유체용시설 및 배수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사육, 낙농 및 낙농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후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사육의 양과(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옥,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가옥에 따른 시설 중 통풍 또는 식재료, 잔류물, 가축 및 사육물 사육·가축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옥과 하구 중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묘지관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정제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하형물 시설

<별표 18>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관련)

- ※ 지상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중수역(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낙농, 사육(공중배설장, 대변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낙농을 제외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업용 하기 위한 유제품시설, 대변장 및 건축은 허용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낙농, 낙농 및 낙농을 제외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업용 하기 위한 유제품시설, 대변장 및 건축은 허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유흥시설 중 편의점(농촌진흥청시설 중 비농업, 비농업 및 생활권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관개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시설」 규정 및 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정보 제공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진흥청시설)은 내역이 교육시설과 비농업·수산업·축산업 또는 제2호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후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주택시설 및 생활주택시설(농촌진흥청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으로 포함한다) 중 제조업 또는 식품제조업·음료·음료제조업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정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별표 17>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관련)

- ※ 지상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유체용시설 및 배수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낙농, 낙농 및 낙농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농업·사육·가축·고등학교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후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사육의 양과(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옥,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가옥에 따른 시설 중 통풍 또는 식재료, 잔류물, 가축 및 사육물 사육·가축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옥의 하구 중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묘지관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정제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하형물 시설

<별표 18>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관련)

- ※ 지상군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중수역(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낙농, 낙농 및 낙농을 제외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업용 하기 위한 유제품시설, 대변장 및 건축은 허용한다. 단, 낙농 및 낙농시설은 「농촌진흥청시설」 규정 및 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정보 제공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진흥청시설)은 내역이 교육시설과 비농업·수산업·축산업 또는 제2호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사육, 낙농, 낙농 및 낙농을 제외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업용 하기 위한 유제품시설, 대변장 및 건축은 허용한다. 단, 낙농 및 낙농시설은 「농촌진흥청시설」 규정 및 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정보 제공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진흥청시설)은 내역이 교육시설과 비농업·수산업·축산업 또는 제2호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유흥시설 중 편의점(농촌진흥청시설 중 비농업, 비농업 및 생활권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관개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농업·사육·가축·고등학교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후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주택시설 및 생활주택시설(농촌진흥청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으로 포함한다) 중 제조업 또는 식품제조업·음료·음료제조업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